

창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1128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정주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이창희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가 C 사이에서 2019. 11. 12.자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2. 접수 제101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3년 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49540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5.

“채무자(C)는 채권자(원고)에게 금 23,753,146원 및 그 중금 12,433,994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송달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2. 4.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의 채무자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9. 11.

12.자로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 1011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무자력자가 되었고 그 이후 지방세 등 세금도 연체 중이다.

다. 원고의 이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사건 제소일 무렵인 2020. 5.

31.까지는 37,478,231원이다 {23,753,146원 + { 12,433,994원 × (2370일/365일)} × 17% }이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 법원 행정처장,

D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C와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집이 필요하여 급매로 나온 이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4천

살피건대, 피고가제출하는각종서증만으로는피고항변과같은선의를인정하기어렵다.

오히려피고제출을을7(매매계약서)에도매매대금2억4천만원에계약금이2,400만원인데피고는그중2,300만원만

피고와C

사이의매매계약서상중개인입회도없을뿐더러C가매도이후에도전세약정을하였다는데등의내용도없음에도C가계속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C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2. 접수 제101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주장을 인용한다.

판사 예지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I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제10층 J호 84.77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E 대 106791.8㎡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06791.8 분의 65.400

--- 이상 ---